	충청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	규정번호	6-2-5	
		제정일자	2019. 9. 1	
		개 정	일자	2022. 7. 15
			Ver.	1
		페 이 지	2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「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」(이하 "혁신지원사업"이라 한다.)에 따라 충청대학교(이하 "대학"라 한다.)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7. 15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전략과제"라 함은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(교육・산학협력・기타) 세부 프로그램을 말한다. <개정 2022. 7. 15.>
2. "혁신성과지표"라 함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전략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평가 준거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의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4조(사업비관리위원회) ① 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관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2. 7. 15.>

② 사업비관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2인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15.>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사업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 <개정 2022. 7. 15.>

1. 대학 비전과 중장기발전계획의 정합적 추진
2. 사업계획 및 전략과제 실행계획 수립 심의
3. 사업 시행과정 및 성과지표 관리 실시 사업비 관리 운영 및 사업 진도 관리
4.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 변경(비목내) <개정 2022. 7. 15.>
5.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연차평가, 중간평가, 종합평가 실시를 통한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
6.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그 밖의 혁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22. 7. 15]

제5조(사업관리부서) 혁신지원사업의 사업관리부서는 기획처 평가지원실로 한다.

제6조(사업비 중앙관리) ①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사업관리부서에서 중앙관리 한다.

② 사업비 중앙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.

1. 사업비 예산 수립과 집행・결산의 상호 독립적 분리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부서와 사업관리부서의 분리
2.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일원화
3.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
제7조(성과관리) 혁신지원사업의 사업추진부서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고 사업관리부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모니터링 평가) ①사업관리부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.

② 사업관리부서는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을 수시로 평가하고, 모니터링 결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업비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. <개정 2022. 7. 15.>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혁신지원사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